

【 주간 이슈 】

연금 전환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촉진 정책 칠레와 영국의 비교견적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경희 전문연구위원

- 연금상품의 복잡성·전문성 등으로 인해 향후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시 소비자보호 및 효율적인 시장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 최근 정부 및 감독당국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장치를 크게 강화하였으며, 향후에도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시켜 시장효율성을 제고시키려는 노력은 지속될 것임.
- 연금전환 시장이 발달한 칠레와 영국에서는 정부 및 금융감독당국에서 중앙 집중적인 비교견적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시키는 등 소비자보호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됨.
 - 칠레의 SCOMP는 모든 시장참여자에게 의무적용되는 시스템으로 상품 공급자들이 소비자의 여건에 부합하는 자사 가격을 제시하면 소비자가 최적 조건을 수락 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연금계약의 63.4%가 최저가격조건으로 전환되었으며, 관련 수수료도 인하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투명성이 제고됨.
 - 영국의 OMO(open market option)는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데 감독당국에서 표준적인 연금상품에 대해 보험회사별 가격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그 정보를 활용하여 상품공급자를 변경할 수 있음.
 - 칠레와 달리 영국에서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자사의 가격정보를 제공함.
-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연금지급 관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최적의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시장여건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임.
 -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볼 때 판매 후 사후적 구제에 해당하는 분쟁조정보다는 적정수준의 정보 공개, 시장감시 기능 강화 등 시장규율 확립을 통한 사전예방이 더 바람직함.
 - 연금전환 관련 비교견적 시스템은 소비자의 정보탐색 비용을 절감시켜 주고, 가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임.

1. 검토배경

- 지난 6월 개정된 보험업법에서는 업무영역 확대, 상품개발 및 자산운용 측면의 자율성 확대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 도입, 허위·과장광고 규제 근거 마련 등 소비자보호 장치는 크게 강화됨.
 - 이는 갈수록 보험상품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소비자와 보험회사(판매채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져 보험소비자 보호가 중요한 정책적 고려사항이 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임.
 - 금융감독원에서도 올해를 금융소비자보호 원년의 해로 설정하고 불완전판매비율 공시,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연금 포함)에 대한 사업비 공시 강화 등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각종 감독장치를 마련함.
- 한편, 정부가 최근(2010.8.24)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퇴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사내유보액에 대한 세제혜택의 단계적 폐지, 일시금 수령 시 세제혜택 축소 등 퇴직연금 시장 형성을 촉진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관련 시장의 성장이 예상됨.
 - 일시금 수령 시 정률공제율¹⁾을 기존 45%에서 40%로 축소해 퇴직급여를 일시금보다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함.
- 위와 같은 정부정책의 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와 효율적인 연금 전환(annuitization)²⁾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및 감독기관의 정책적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해외사례를 통해 가용한 정책을 소개하고자 함.
 - 일찍이 연금전환 시장이 발달한 칠레와 영국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연금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중앙 집중적인 비교견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이들 국가의 제도운영 현황과 성과 등을 살펴보고 소비자보호와 건전한 연금 전환 시장 촉진 측면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1)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과세표준 금액은 퇴직급여액에서 정률공제와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출됨. 정률공제를 허용함에 따라 퇴직급여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감되므로 과세대상금액이 크게 축소되는 효과가 있음.

2)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근로(적립)기간 중 형성된 적립금을 퇴직 후 연금소득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의미함.

2. 칠레의 비교견적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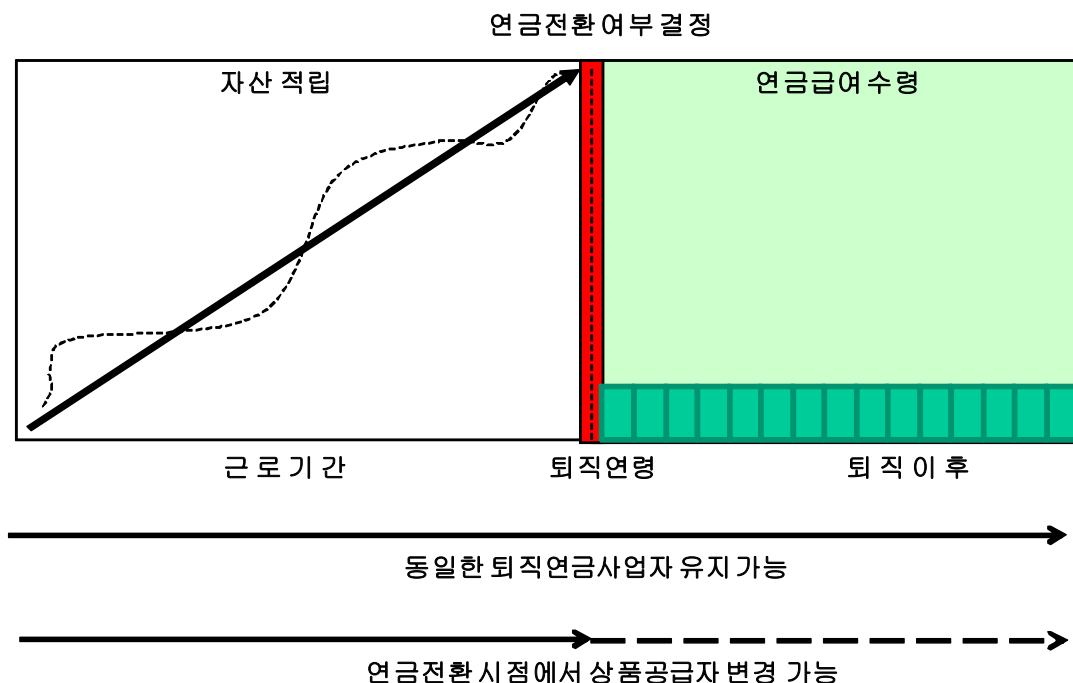
가. 퇴직연금제도의 지급 관련 규제

□ 칠레는 1981년 퇴직연금제도가 공적연금제도를 완전 대체함에 따라 퇴직연금제
도에서 연금전환을 의무화시킴.

- 일정 규모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한 퇴직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없고 종신
토록 소득흐름이 가능한 연금유형의 상품(annuity-type product), 즉 프로그
램인출(programmed withdrawal)³⁾이나 연금을 구입해야 함.
- 프로그램인출은 적립금 규모가 국가에서 정한 최저 수준에 해당하는 연금상품
을 구입할 수 없을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밖에는 연금상품을 구입해야 함⁴⁾.

□ 퇴직시점에서 가입자는 기존 퇴직연금사업자를 고수하거나 사업자를 변경하여
자신에게 더 유리한 가격을 제시하는 새로운 상품 공급자를 선택할 수도 있음.

<그림 1> 연금전환 시점의 상품 공급자 선택



3) 보험회사가 아닌 퇴직연금사업자(APF: private pension fund manager)가 공급함.

4)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자는 2007년 기준 64만 2천명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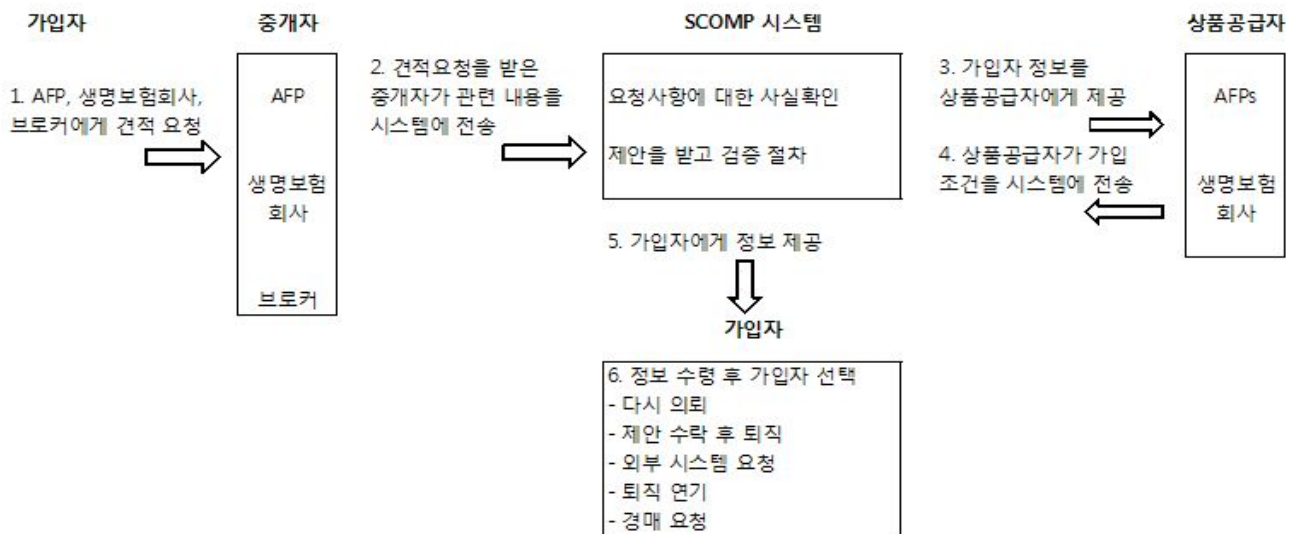
나. 비교견적 시스템 운영 현황

□ 칠레에서는 2004년 8월을 기점으로 연금가격에 대한 비교견적 시스템(SCOMP)⁵⁾을 도입하고 모든 퇴직자에게 동 시스템의 활용을 의무화시킴.

- 보험회사, 보험 브로커 및 AFP(private pension fund manager) 등 관련 사업자 모두가 동시에 온라인 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있어 소비자는 자신의 적립금으로 수령 가능한 급여에 대한 비교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이는 종신소득흐름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을 의무화하였기 때문에 관련 시장의 투명성과 가격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임.

□ 퇴직 예정자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연금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게 됨.

<그림 2> 칠레의 비교견적시스템(SCOMP) 운영 절차



자료: IOPS, "Transparency and competition in the choice of pension products: The Chilean and UK experience", Working Paper No.7, May 2008.

- 첫째, 퇴직 예정자가 중개기관을 통해 연금전환을 요청하면, 요청받은 중개기관이 개인정보(연령·성·적격성·적립금 규모)를 SCOMP에 송부함.
- 둘째, 시스템에서 요청사항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입자 정보를 상품공급자에게 제공하면 상품 공급업자가 가입조건을 시스템에 전송함.

5) Sistema de Consultas y Ofertas de Montos de Pension

- 셋째, SCOMP는 프로그램인출과 연금지급에 대한 견적을 퇴직 예정자에게 전송하며, 동 내용은 15일 간 유효함.
- 마지막으로 관련 정보를 수령한 퇴직 예정자는 제안된 견적 중 최적조건을 수락하거나 SCOMP에 다시 견적을 의뢰할 수 있음.

다. 제도 운영 성과

□ 2004~2007년 누적 시스템 이용 현황은 가입자 기준 11만 5천명, 건수 기준 14만 9천건으로 나타나 1인당 1.3건 요청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1인당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임.

- 동 시스템은 개인들이 직접 견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상당수의 퇴직 예정자는 중개기관을 통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남.
 - 견적을 요청한 중개기관 비중은 보험 브로커가 38.9%로 가장 높고, AFP 34.4%, 보험회사 25.6% 순임.

<표 1> SCOMP 활용도

(단위: 건, 명, %)

연도	요청 건수	요청 가입자수	1인당 요청건수	수락 건수	견적요청 중개기관 비중		
					브로커	생보사	AFP
2004	17,275	14,426	1.20	9,849	40.8	27.9	31.3
2005	43,434	33,714	1.29	28,294	36.6	25.2	38.2
2006	37,309	29,154	1.28	23,146	38.9	26.7	34.4
2007	51,137	37,606	1.36	32,524	40.2	27.8	32.0
전체	149,155	114,900	1.30	93,813	38.9	26.8	34.3

자료: <그림 2>와 동일.

□ 적립금의 63%가 최저가격 조건을 제시한 상품 공급자를 통해 전환된 것으로 나타나 SCOMP 시스템은 연금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킨 것으로 파악됨.

- 가입금액 기준 전체 계약의 85.3%가 최저가격(best quote), 차상위 최저가격(second best quote), 차차상위 최저가격(third best quote) 내에 분포함.

<표 2> 체결된 연금계약 분포(견적 순위별)

(단위: %)

	2004	2005	2006	2007	전체	비중*
최저가격(best quote)	4,409	11,638	10,033	12,285	38,365	63.4
두 번째 최저가격 내(second best quote)	1,029	2,830	2,291	2,624	8,774	77.9
세 번째 최저가격 내(third best quote)	499	1,342	1,193	1,410	4,444	85.3
기타(other quotes)	703	2,541	2,676	2,994	8,914	100.0
전체	6,640	18,351	16,193	19,313	60,497	-

주: * 적립금 기준

자료: <그림 2>와 동일.

□ 칠레 정부의 모집수수료(intermediation fee) 상한 정책과 함께 SCOMP 제도 운영은 수수료 수준을 크게 인하시킨 것으로 나타남.

○ 연금전환 관련 모집수수료는 1999년 말 6% 수준으로 높아졌으나, 정부에서 수수료 상한을 2.5%로 제한하고, SCOMP 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평균 수수료 수준이 2.5% 미만으로 하락함.

□ 아울러 상품 공급자 간 가격격차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 연금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됨.

○ 납입보험료 대비 수령하는 연금급여 현가를 나타내는 연금지급비율(MW: Money's Worth)의 평균값은 높아지고, 표준편차 및 변동계수(표준편차/평균)는 낮아짐.

<표 3> 칠레의 연금지급비율(MW)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및 변동계수

	1999.3	2002.3	2003.3	2004.3	2005.3
평균(a)	0.980	1.080	1.036	1.064	1.062
표준편차(b)	0.049	0.047	0.042	0.045	0.045
변동계수(b/a)	5.009	4.363	4.074	4.239	4.245

자료: <그림 2>와 동일.

3. 영국의 비교견적 시스템

가. 배경

- 영국은 DB제도 선택 시 공적연금의 소득비례 부문에 대한 적용제외를 인정하는 등 일찍이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하고 퇴직연금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정책을 견지해왔으며, 지급방식 측면에서도 퇴직연금의 연금전환을 의무화시킴.
 - DB제도, DC제도 및 퇴직계좌 모두 일시금 인출은 적립금의 25%까지만 허용하며, 잔여자산은 75세 도달 시점까지 연금으로 전환시켜야 함.
- 퇴직자의 행동분석 결과 연금전환 시점에서 기존(적립단계) 사업자가 최적조건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다수의 가입자가 동일한 사업자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함.

<표 4> 퇴직 예정자에 대한 비교견적 시스템(OMO) 정보 제공

퇴직 4~6개월전	퇴직 6주전
- 현재 가입한 사업자가 퇴직 시 제공할 수 있는 연금급여에 대한 조건을 제시함 - 사업자는 만약 가입자가 더 높은 연금급여를 수령하고자 한다면 OMO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함	- 사업자가 퇴직 시 적립금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함 - 가입자는 추정된 적립금을 활용하여 OMO 시스템에서 가격비교 할 수 있음

- 이에 Income and Corporation Taxes Act 1988에서 가입자들은 기존 사업자(pension provider) 외에 다른 사업자(annuity supplier)로부터 연금을 구입할 권리가 있음을 법으로 명시함.
- 금융감독당국인 FSA는 2002년부터 연금전환 시점에서 가격비교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퇴직 예정자에게 명시적으로 통지함⁶⁾.
- OMO(open market option)라고 불리는 비교견적 시스템은 연금전환 시점에서 연금상품 공급자를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지시키고 조건 비교 후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연금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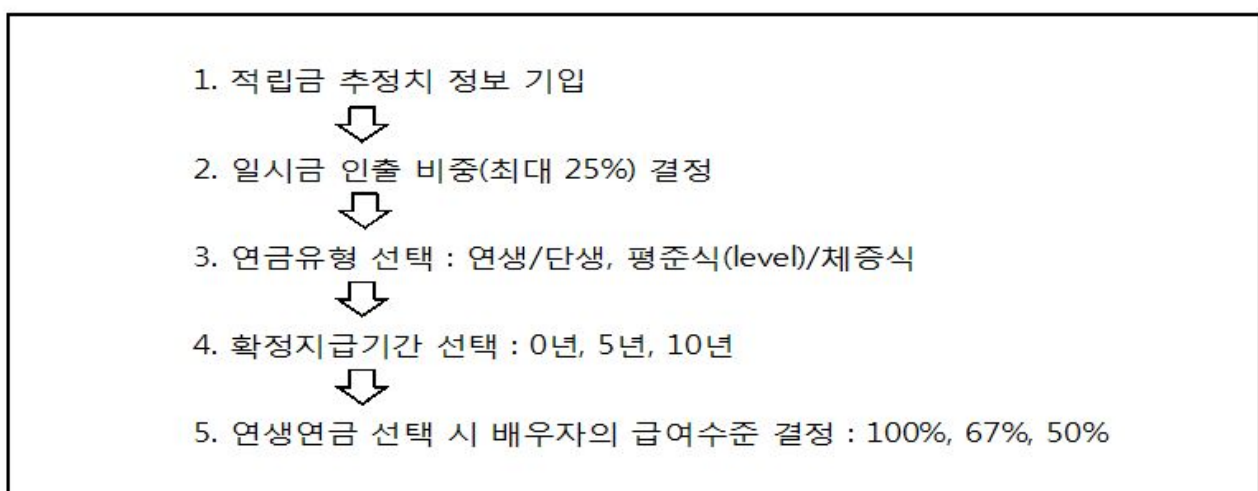
6) 관련 규정은 FSA Conduct of Business 19 : Pensions supplementary provisions, section 4 Open market options에 있음.

- 퇴직 4~6개월 전에 현재 가입한 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연금전환 조건을 제시하고, 연금상품 공급자 변경이 가능함을 서신(wake up letter)으로 보냄.
- 퇴직 6주전에는 퇴직 시점에서 수령 가능한 적립금 추정치를 송부하며, 가입자는 동 자료를 활용하여 OMO 시스템에서 가격정보를 비교할 수 있음.

나. 제도 운영 현황

- OMO 시스템의 가격비교는 FSA 산하 금융소비자교육기관(CFEB: consumer financial education body)에서 운영하며 칠레와 달리 가입자와 사업자가 동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님.
 -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지만 실제 연금상품을 판매하는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동 시스템에 자사의 가격정보를 제공함.
- 가입자가 OMO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신의 연금전환 조건을 선택하면 가능한 연금급여 규모가 보험회사별로 제시됨.
 - 먼저 적립단계의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해 준 퇴직시점의 적립금 추정액을 기입하고, 가입 조건(일시금 비중, 연금유형, 확정지급기간 등)을 선택함.

<그림 3> OMO 시스템 이용 절차



주: 단생연금은 연금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인 경우를 말하며, 연생연금은 두 사람 이상일 경우인데 연금지급은 마지막 연금수익자가 살아 있을 때까지 계속되며 모두 사망하면 종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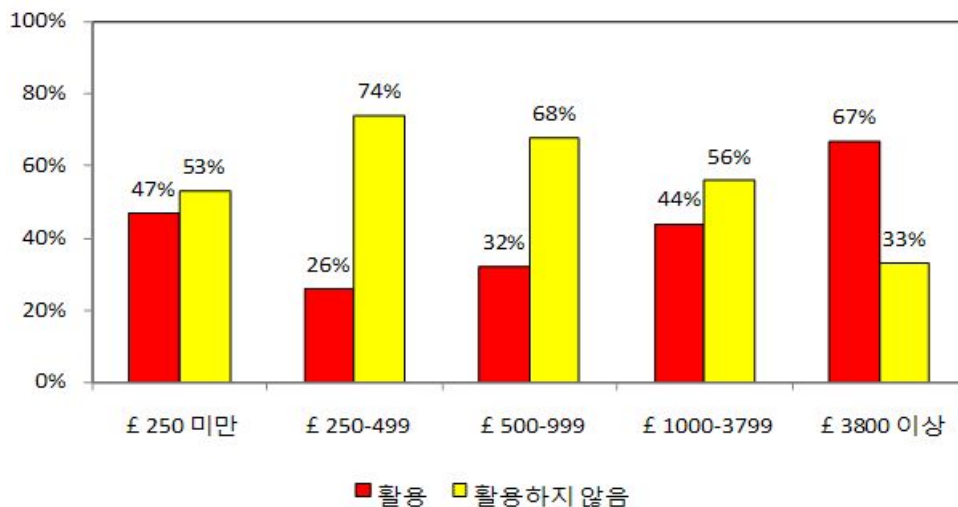
□ 상품 공급자 변경을 통해 연금지급률이 높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자를 변경한 가입자는 4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⁷⁾.

- 사업자 간 가격격차가 10% 이상 존재하며 최대 30%까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업자를 유지하는 현상유지 편의가 발견됨.
- 이는 행동재무론에서 지적하는 타성, 인식 부족, 변경 양식의 복잡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OMO 시스템 활용 여부는 고소득자가 높고 저소득자는 낮아 소득수준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나타남.

- 월 소득규모가 £250~499인 저소득계층의 활용도는 26%에 불과한데 비해 £3,800 이상 고소득계층의 활용도는 67%에 달함.

<그림 3> 소득계층 별 OMO 활용 비중



자료: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Annuities: bonus or burden?*, December 2005.

□ 전문가들은 OMO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연금유형 선택 단계와 선택한 연금유형에 대한 가격비교 단계로 구분되어 운영되어야 한다고 조언함.

- 먼저 자신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위험에 대한 선호, 지출 패턴 등을 종합적으

7)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Annuities: bonus or burden?*, December 2005.

로 고려하여 올바른 연금유형(연생·단생, 정액·체증, 표준체·위험체 등)을 선택하도록 함.

- 자신에게 적합한 연금유형을 선택한 후 보험회사별 가격비교 테이블을 참고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시사점

□ 연금시장이 발달한 칠레와 영국의 사례는 정부가 중앙 집중적인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등 전반적으로 효율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됨.

- 정부가 아닌 제3기관(재무상담사, 브로커 등)에서 비교견적 서비스 제공 시 정보제공 양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
- 사례로 제시한 두 국가는 사업자와 독립된 기관에서 표준화된 연금상품에 대한 비교견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연금시장의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됨.
- 소비자의 현상유지 편의 등으로 인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연금에 대한 이해력과 지식을 높이는 데 일조함.

□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연금지급 관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최적의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시장여건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임.

- 연금전환은 그 거래의 복잡성·전문성 등으로 인하여 타 금융상품보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더 높은 분야임.
-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볼 때 판매 후 사후적 구제에 해당하는 분쟁조정보다는 적정수준의 정보 공개, 시장감시 기능 강화 등 시장규율 확립을 통한 사전예방이 더 바람직함.
- 연금전환 관련 비교견적 시스템의 운영은 소비자의 정보탐색 비용을 절감시켜 주고, 가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임. KiRi